2024학년도

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

학교문화조성

<학부모총회 연수 자료>

불법찬조금 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

장 호 원 고 등 학 교

2024학년도
불법찬조금 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

1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

□ 불법찬조금의 정의

불법찬조금이란?

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·청소년단체, 교육활동후원단체) 등이 **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**

➪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.

□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

주요 유형

○ **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**

▶ 대회출전비,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▶ 운동부 대회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, 성과금 등 일체 편성 금지

○ **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**

▶ 정기공연,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,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○ **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**

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, 졸업식 등), 교직원 선물비,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·모금하여 집행

○ **교직원 등이**

▶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○ **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**

2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

【 예방교육 강화 】

□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실시

○ (교육대상) 학교관리자, 교직원, 학교운영위원, 학부모 등

※ **필수대상** : 운동부 담당교사, 운동부 감독 및 코치, 학부모회 회장·총무, 운동부 학부모

☞ **불법찬조금 예방교육에 필수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**

○ (교육시기) 연 2회 이상 실시(학부모 연수 시 필수 실시)

※ 학부모대상 교육은 안내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 가능

○ 제공된 수수금지 물품 등 처리 요령에 대해 안내 철저

○ 학교발전기금회계 및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강화

<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>
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⇒ 불법찬조금 수수자와 제공자도 처벌

※ 법령위반 시[제21조(징계), 제23조(과태료 부과)]

- 공직자 등(교직원) : 징계대상,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- 제공자 :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
< 참고 : 교육 시 활용 참고 자료 >

※ 학교발전기금회계 • 청탁금지법관련 안내

1. 학교발전기금 관련 자료: 학부모 총회 등 행사 시 불법찬조금 예방연수와 병행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의지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안내
   ☞ 자료위치 : 경기도교육청(www.goe.go.kr) > 통합자료실 > 재무관리과
2.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: 학부모 총회 등 행사 시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, 자료 배포
   ☞ 자료위치 : 경기도교육청(www.goe.go.kr) > 청렴한 경기교육 > 청렴나눔방

【 홍보 강화 】

□ 불법찬조금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

○ 전 학부모 대상 학기 초 및 집중기간에 가정통신문 발송

○ **(안내사항)** 학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, 불법찬조금신고센터, 「청탁금지법」 안내, 불법찬조금 사례·유형 및 수수자·제공자 처벌 등 포함

□ 불법찬조금 예방 모바일 홍보

○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초 및 집중시기 홍보 문자 발송

○ 불법찬조금 예방 모바일 홍보 학기별 1회 실시

○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SMS(문자) 발송

< 참고 : 홍보 문자 예시 >

(예1)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을 근절합시다.
(예2) 우리학교는 어떠한 찬조금품도 받지 않습니다. 교내외 활동 중 학부모님에 의한 간식 제공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.
(예3)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불법찬조금 제공자도 처분대상이 되오니 불법찬조금 예방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학교홈페이지 홍보

○ 학기 초 및 집중시기에 불법찬조금 예방 내용(학교장의 근절 의지, 불법찬조금신고센터, 사례 등을 포함)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

□ 공문서 상단 “불법찬조금 예방” 관련 홍보문구 삽입

○ 학기 초 및 집중시기에 업무관리시스템 상하단에 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홍보문구 삽입

【 신고센터 운영 및 공익신고 포상금(보상금) 제도 안내 】

□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

○ **(경기도교육청)** 공익제보센터 상시 운영

< 불법찬조금 신고처 >

홈페이지	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www.goe.go.kr) → 전자민원 → 신고센터 → 공익제보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
국민신문고	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 → 민원
전화문의	(감사관) ☎ 031-820-0859

○ **(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)**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 → 신고센터 → "불법찬조금 신고" 메뉴 이용

□ 공익신고 보상금·포상금 제도 운영

○ **(신고대상)** 공무원 등(사립학교 교직원, 계약직 교직원 포함)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·공익침해행위, 금품·향응 수수 등 비위,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등

○ **(지급기준)**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한도액 내 지급

* 최고한도액: 보상금 30억원 / 포상금 2억원

○ **(지급방법)** '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'심의 후 보상금·포상금 지급